

『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(중앙공원)조성을 위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의 2(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)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공원면적의 70%이상을 기부채납, 30%이하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
-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안) 제2장 : 협약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- 안) 제3장 :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
 - 제8조 ~ 제10조 기부채납의 대상·시기·조건
- 안) 제4장 :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
 - 제11조 부지 매입비 등 납입

- 안) 제10장 : 공원시설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
 - 제18조 ~ 제25조 설계·인허가, 실시계획인가, 공사기간, 공사의 착수,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, 공정관리, 사업이행 보증금, 구미시장의 감독
- 안) 제11장 : 구미시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제26조 행정적 지원
- 안) 제12장 :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
 - 제28조 ~ 제31조 위험배분의 원칙,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 사유 및 처리, 구미시장의 귀책사유 및 처리,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
- 안) 제13장 : 협약의 종료
 - 제32조 ~ 제3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,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, 협약해지시의 효과, 해지시지급금의 산정
- 안) 제14장 : 권리의 처분
 - 제36조 ~ 제38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, 비공원시설 사업의 공동시행,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
- 안) 제15장 : 분쟁의 해결
 - 제39조 ~ 제40조 분쟁의 해결, 중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2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」 동의안은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와 도시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하여
-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70%이상 조성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%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간 협약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,
도시공원은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